

[첨부3-4-2]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마운틴자산운용 주식회사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17.01.03

개정 2023.03.30

제1조(목적)

본 기준 및 절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제22조제3항에 의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를 차별하여 수수료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등(이하 “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각종 수수료로서 이 기준 및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운용수수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를 말한다.
- ②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계약재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운용성과와 상관없이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를 말한다.
- ③ 성과수수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자본시장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중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 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 (자본시장법 제98조의2,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77조의2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
- ④ 중도해지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의 감액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가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
- ⑤ 기준수익률 : 성과수수료를 수령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목표수익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지표 또는 회사와 고객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

제4조(수수료의 부과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인정 가능한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경영진이 책정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 ①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고려해야 하며, 관련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사항이 없는 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핵심설명서, 투자일임계약의 경우에는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일임계약서에 수수료 계산방법, 수수료 계산기간 및 수수료 지급시기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 ② 투자일임계약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수수료 계산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투자일임계약 수수료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사전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혼합형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수수료는 투자일임계약 체결 시점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최고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 1. 기본형 :기본수수료만 지급
- 2. 혼합형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
- 3. 성과형 :성과수수료만 지급

제7조(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86조(집합투자업자의 성과보수의 제한),동법 제98조의2(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자의 성과보수의 제한)에 따라 운용실적과 연동된 성과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등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8조(투자일임계약의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 ① 투자일임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 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7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 ④ 계약의 감액 또는 중도해지시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설명 의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47조1항 및 동법 시행령 53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1항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협회에 대한 통보)

회사는 법 제58조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기준의 제정 및 개정)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이사의 수가 2 인 이하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 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검토 및 협조 절차를 거쳐 대표이사가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에서 정하는 투자일임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투자일임업 등록일 이후부터 시행한다.